

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
조문별 개정이유서

2024. 4.

금 융 위 원 회

1.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개인투자자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한도 확대 [안 제27조제6항제3호 신설]

가. 개정 이유

- 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 대해 5백만원(소득 1억원 이상은 2천만원)까지만 투자 가능
- 공기업 연관 지역에너지 사업 등의 경우에는 투자리스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투자 한도로 인해 지역주민의 투자 참여기회가 제한됨
- ※ [참고] '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'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'에 대해 4천만원까지 허용했었고, 추후 한도 완화에 대한 효과를 감안하여 법제화 추진시 반영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증액함

나. 개정 내용

- 「민간투자법」상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투자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함 (기존 5백만원 → 증액 3천만원)
- *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투자자의 경우의 한도도 확대 (기존 2천만원 → 증액 5천만원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투자자는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 마련, 차입자는 사업자금 조달 및 지역 수용성 문제 해결 가능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2.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 관련 기준시점 명확화 [안 제11조]

가. 개정이유

- 온투법상 자기계산 연계투자시 법령상 한도*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, 한도의 기준인 “자기자본”의 산출 기준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

* 자기계산 연계투자 잔액이 자기자본 이내(법§12④2), 동일 차입자에 대한 투자는 자기자본의 5% 이내(령§11③2)

나. 개정 내용

- 자기계산 연계투자시 자기자본 기준시점을 ‘반기말 기준’으로 정함

※ 「상호저축은행법」과 동일한 기준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자기계산 연계투자시 자기자본 기준시점이 명확해 짐에 따라 온라인 투자금융업자 및 금융당국의 업무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